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456
----------	------

2016년 12월 02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10월 31일, 서울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0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16년 12월 02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)

### 가. 제안이유

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1)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저영향개발 자문을 위원회 기능으로 추가함(안 제21조제2항제2호)

- 2)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원장 격상 및 내부위원 증가로 위원을 40명에서 45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(안 제22조제1항)
- 3) 시장이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. (안 제22조제2항)
- 4) 내부위원을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, 물순환안전국장, 안전총괄본부장, 도시재생본부장, 푸른도시국장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22조제3항)
- 5) 공동위원장을 물순환안전국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하고자 함 (안 제22조제4항)
- 6) 물순환 시민위원회 기능 보좌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실무 연구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구성·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(안 제27조제3항)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#### 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, 물순환시민위원회의 자문기능에 대상범위를 추가하고 시민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위원장 직급 및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는 한편, 위원회 보좌를 위한 실무연구단 신설 및 기타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## ■ 주요골자별 의견

### 가. 자문위원회 기능추가 관련(안 제21조제2항제2호)

- 안 제21조제2항제2호는,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현행 자문기능 중 하나인 ‘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’에 ‘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관한 사항’을 추가하려는 것으로,
- 그동안 「물순환 총괄계획단 운영계획(행정2부시장 방침 제83호, 2015.3.12.)」에 따라 설치된 ‘물순환 총괄계획단’이 서면자문 형태로 자문하던 ‘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관한 사항’을 본 조례의 ‘물순환 시민위원회’가 맡도록 함과 동시에,
- 기존 총괄계획단은 안 제22조제3항에 의거 시민위원회 산하 실무 연구단으로 개편하고 총괄계획단 자체는 폐지한다는 취지임.
- 이는 조례에 의한 ‘시민위원회’와 행정2부시장 방침에 의한 ‘총괄계획단’이 서로 양립하면서 역할이나 기능면에서 상당부분 중복되어 이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,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
[표 1] 시민위원회와 총괄계획단의 비교

	물순환 시민위원회(현행)	물순환 총괄계획단
설치근거	『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』 제21조	『물순환 총괄계획단 운영계획』 (행정2부시장 방침 제83호, 2015.3.12)
주요기능	· 물순환 도시종합계획, 저영향개발, 빗물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자문 · 물순환 정책의 점검 및 평가 · 빗물관리시설, 물 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 자문	· 물순환 도시조성 관련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으로 일관성 있는 물순환 계획 수립 유도 · 물순환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 검토 · 진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공공 공사 및

	· 지하수 보전·관리, 토양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	대지면적 10,000㎡ 이상의 대규모 민간 개발에 대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
구성인원	· 전체위원회는 공무원(1), 시의원(2), 외부 전문가(36) 총 39명으로 구성 · 분과위원회는 빗물관리 13명, 물의 재이용 12명, 지하수 분과14명으로 구성	· 5명의 전문가로 구성 ※ 구성원 모두 물순환 시민위원회 빗물관리 분과 위원임
개최실적	· '14년도 : 1회 (분과회의 1) · '15년도 : 6회 (정기회의 2, 분과회의 4) · '16년도 : 2회 (정기회의 1, 임시회의 1)	· '15년도 : 7회 · '16년도 : 2회 ※ 자문안건의 수는 총 25건임
자문방식	합동회의	서면자문

#### 나. 위원회 구성 관련(안 제22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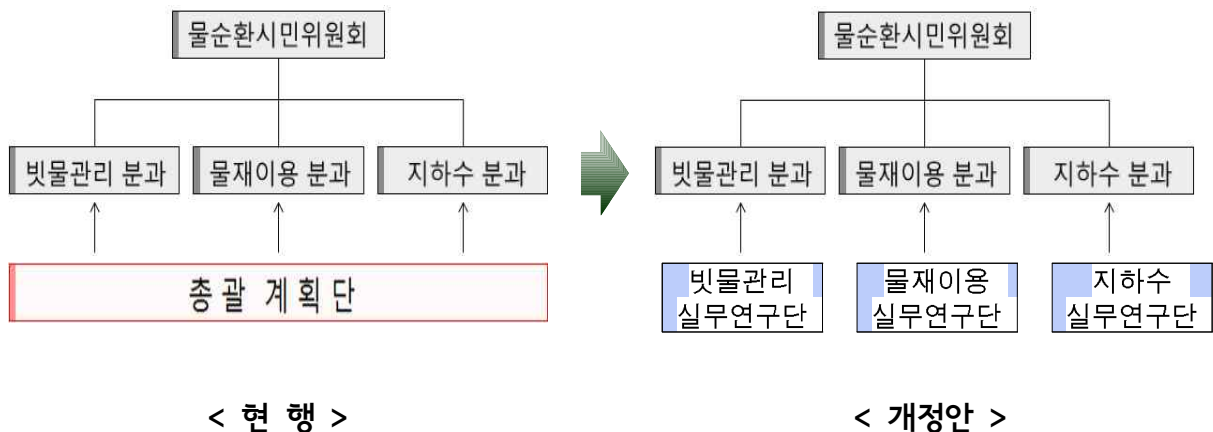
- 안 제22조는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40명에서 행정2부시장, 안전총괄본부장, 도시재생본부장, 푸른도시국장 등을 추가하여 4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, 외부위원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위촉 시 성별을 고려토록 하려는 것으로,
- 물순환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건축, 공원·녹지, 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, 현 위원회는 국장급 위원회로서 자문범위가 물순환안전국 내로 국한되어 물순환 정책의 총괄적인 가이드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.
- 따라서, 행정2부시장을 비롯하여 관련 본부·국장을 추가함에 따라 위원회 위상 강화는 물론 자문범위의 폭이 크게 넓어져 보다 실질적인 위원회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됨.

[표 1] 서울시 시민위원회 운영 현황

연번	단체명	운영목적	위원장
1	녹색서울 시민위원회	기후 변화, 에너지, 생태계보전, 녹지이용, 자원절약 관련 정책 자문	시장, 위촉위원2
2	청계천 시민위원회	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미흡했던 생태환경, 역사문화, 제도 등 자문 및 평가	행정2부시장, 위촉위원2
3	한강 시민위원회	한강 자연성 회복 및 생태 친화적 이용 자문	행정2부시장, 위촉위원1
4	버스정책 시민위원회	시내버스 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	행정1부시장
5	물순환 시민위원회	물순환정책, 빗물관리, 물 재이용, 지하수 및 토양 관련 정책 자문	국장, 위촉위원1

다. 실무연구단 관련(안 제27조제3항)

- 안 제27조제3항은, 현재 물순환 시민위원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물순환 총괄계획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체제에서, 총괄계획단을 폐지하고 분과위원회별 직할 실무연구단을 새로이 설치하려는 것임.



[그림 1] 분과위원회별 실무연구단 신설(개정안)

- 이는 그동안 시민위원회와 총괄계획단이 서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평적·보완적 구조에서, 총괄계획단을 전문분과 단위의 실무연구단으로 개편하여 시민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직할조직화함으로서,
- 시민위원회와 총괄계획단 간에 기능의 중복을 피함과 동시에 시민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**

**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##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약에 관한 사항

제22조제1항 중 “40명”을 “4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은”을 “외부위원은”으로, “자(이하 “외부위원”이라 한다)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및 물순환안전국장(이하 “내부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”를 “자로 하며,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내부위원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, 안전총괄본부장, 도시재생본부장, 물순환안전국장, 푸른도시국장을 포함한다.

제22조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1인 및 물순환안전국장”을 “1명 및 행정2부시장”으로 한다.

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분과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연구단을 둘 수 있으며,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1조(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</u></p> <p>3. ~ 12. (생략)</p> <p>제2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<u>4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(이하 "외부위원"이라 한다)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및 물순환안전국장(이하 "내부위원"이라 한다)으로 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1조(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업협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45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외부위원은 -----</u> ----- ----- <u>자로 하며,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내부위원은 3급 이상의 공무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<u>1인 및 물순환안전국장</u>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27조(분과위원회) ①·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u>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, 안전총괄본부장, 도시재생본부장, 물순환안전국장, 푸른도시국장을 포함한다.</u></p> <p>④ ----- --- <u>1명 및 행정2부시장</u>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 <p>제27조(분과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분과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연구단을 둘 수 있으며,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</u></p>